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심신장애”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변경 등〉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58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의용소방대원 해임사유 중 “심신장애”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30.
3. 회 부 일 : 2025. 5. 0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원의 해임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소방대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대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의용소방대원 해임사유 중 “심신장애”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u>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 4. ~ 6. (생략) ② (생략)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 우</u>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현행	개정안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심신장애는 ① 형사책임능력판단과 관련한 심신장애(心神障礙)와 ② 질병·장애의 판단과 관련한 심신장애(心身障礙)로 구별할 수 있는데,

① 심신장애(心神障礙)는 마음과 정신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¹⁾하고, 범죄 행위에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온전한 판단 능력 또는 의사 능력이 전제되기 때문에 「형법」 제10조²⁾에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죄는 불처벌하거나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에, ② 심신장애(心身障礙)는 마음과 몸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현행 「장애인복지법³⁾」에 따르면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

1) 「형법」상 심신장애(心神障礙)의 의미는 생물학적 요인으로서 정신장애를 의미하며, 몸과 마음을 의미하는 “심신(心身)”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정신장애”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음. 김성돈, “형법총론(제5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2018), p.366.

2) 「형법」

第10條(심신장애인) ① 心神障礙로 因하여 事物을 辨別할 能力이 없거나 意思를 決定할 能力이 없는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 心神障礙로 因하여 前項의 能力이 微弱한 者의 行爲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危險의 發生을 豫見하고 自意로 心神障礙를 惹起한 者의 行爲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뜻하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함⁴⁾).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사유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신장애는 질병·장애의 판단과 관련한 ② 심신장애(心身障礙)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임.

1981년 제정된 舊 「심신장애자복지법(현행 「장애인복지법」 개정 법률)」⁵⁾에서 심신장애(心身障礙)를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등 정신적 결함”으로 정의한 바 있고, 現 「장애인복지법」⁶⁾에서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4) 心身障礙의 법률적 연혁을 살펴보면 1949년 8월 6일 시행된 「병역법」 제20조(1949.8.6., 제정)에서 “現役兵, 護國兵, 豫備兵, 後備兵 또는 補充兵으로서 疾病 또는 身體나 精神의 異常으로 因하여 當該 兵役에 服할 수 없는 者는 그 兵役을 免除하고 다른 兵役에 轉役한다.”라고 명시하였고, 1959년 12월 22일 시행된 「장기복무심신장애군인에대한전역특별급여금규정」(1959.12.22., 제정) 제1조에서 “장기복무군인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단기4292년 12월 31일까지 전역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역특별급여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형사법상 심신장애(心神障礙)외에 최초로 심신장애(心身障礙라)는 용어가 등장함. 아래 논문에서 참고.

- 신관우, “심신장애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검토”, 한국공안행정학회보 68호(2017), pp.114-115.

5) 「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심신장애자”라 함은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등 정신적 결함(이하 “心身障礙”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해임 사유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해석되어 장애인을 차별할 소지가 있고,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보임.

한편,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및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⁷⁾⁸⁾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고(제3조),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음(제5조).

이는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 업무 보조 등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의용소방대원 간의 협동능력, 위기 시의 적절한 상황 판단 능력 등 정신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임.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의용소방대 제도 개요는 [참고] 참조

<의용소방대 제도 개요>

○ 근 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임 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은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 보조

○ 전국 의용소방대 규모: 전국 18개 시·도 3,968개대 94,717명

(2024.1.1. 기준)

구 분	계	남성 의용소방대	여성 의용소방대	혼성 의용소방대	지역9)·전문10)·전담11)
대수(대)	3,968	1,417	1,305	142	1,104
현원(명)	94,717	36,501	31,249	3,733	23,234

○ 2023년도 활동성과 : 256,743회 1,213,627명 활약

구분	총계	화재		구조· 구급	예방활동 (훈련·홍보·순찰·경계근무 등)			
		화재 진압 보조	재난 활동 보조		화재 예방	행사 안전 지원	생활 안전 지원	홍보 및 기타
횟수 (회)	256,743	6,911	1,981	5,747	86,555	20,117	65,405	70,027
인원 (명)	1,213,627	63,962	8,197	19,901	407,312	86,746	262,162	365,347

9) 의용소방대의 하위 조직으로 동네별로 있는 119안전센터와 같은 개념임.

1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수성 고려하여 전문기술·자격자로 구성·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한 종류임

※ 중장비 전문의용소방대, 산악 전문의용소방대, 수난 전문의용소방대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11) 전담의용소방대는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지역 등 정규 소방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음.

개정안은 “심신장애”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변경하는 것과 더불어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으로 판별하도록 하고 있음.

먼저, 개정안이 “심신장애”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개정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이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현행법이 “심신장애”를 해임 사유로 규정한 취지가 의용소방대원이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에게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발생한 경우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인 의사가 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객관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¹²⁾¹³⁾.

다만, 개정안의 범문은 사고나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직무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참고로 이 법은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령에서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도록 하여 (시행규칙 제6조제2항), 해임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방식의 선택에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음¹⁴⁾.

12) 대법원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13) 참고로 2022년 이후 심신장애를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에서 해임된 사례는 2건임(자료: 소방청)

1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감찰관법」 등의 경우 특별검사 등의 해임 사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¹⁵⁾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경우 위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하여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2016년에 개정하였음¹⁶⁾.

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5)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감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감찰관법」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제14028호, 2016.2.3. 공포 및 시행)」 제8조 개정 전·후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전	현 행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법률 모두 직무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나 방법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있음.

한편, 2022년 12월에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320호)」이 국회본회의에서 의결¹⁷⁾되었는데, 동 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위원 해촉 규정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변경하였음.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개정 내용>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 정 전	개 정 후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 ----- ----- ----- -----.
1. <u>심신장애로 인하여</u>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u>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u>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17) 의결일 2023.12.20., 공포일 2024.1.16.(공포번호 1999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 정 전	개 정 후
「통일교육지원법」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 ⑤ (생략) ⑥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u>심신장애로 인하여</u>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생략) ⑦ (생략)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u> ----- 5.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소방청은 ‘심신장애’라는 표현은 법령의 본래 취지와 달리 장애인 차별의 소지를 내포 할 수 있고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발의된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042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¹⁸⁾도 해당

18)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의원 등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법률이 통일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같은 취지로 발의된 다른 법률안의 심사 경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51

10인, 2210043),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2210038, 최보운의원 등 10인),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2210037, 최보운의원 등 10인),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2210034, 최보운의원 등 10인) 등이 각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